발 간 등 록 번 호
11-1170000-000429-06

ISSN 2287-2752

8월의 법제 소식

vol. 51

법령해석 사례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



법제처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공모기간 2016. 8. 1.(월) ~ 9. 10.(토)

공모자격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공모주제
- 어려운 한자어 및 일본어투 표현
-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용어 및 불필요하게 전문적인 용어
- 시대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개선의견과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정비기준으로 이미 반영되어 정비 중인 용어는 "법제처 홈페이지/법령 · 해석정보/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중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 국민참여입법시스템(http://community.klaw.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내 공모제안 메뉴)
- 우편 접수 : 국민참여입법시스템 및 국민신문고에서 공모서식을 다운받아 양식에 맞춰 작성한 후, 우편으로 제출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420호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 접수시 유의사항 : 접수된 제출자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자의 동의 없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상내역 (상금총액 : 총 13명, 210만원)

최우수상	1편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50만원)
우수상	2편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30만원)
장려상	10편	법제처장 표창 (상장 및 상금 10만원)

※ 시상내역은 공모제안 심사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개선 가능성, 개선 의견의 영향력, 내용의 혁신성, 관련 제출의견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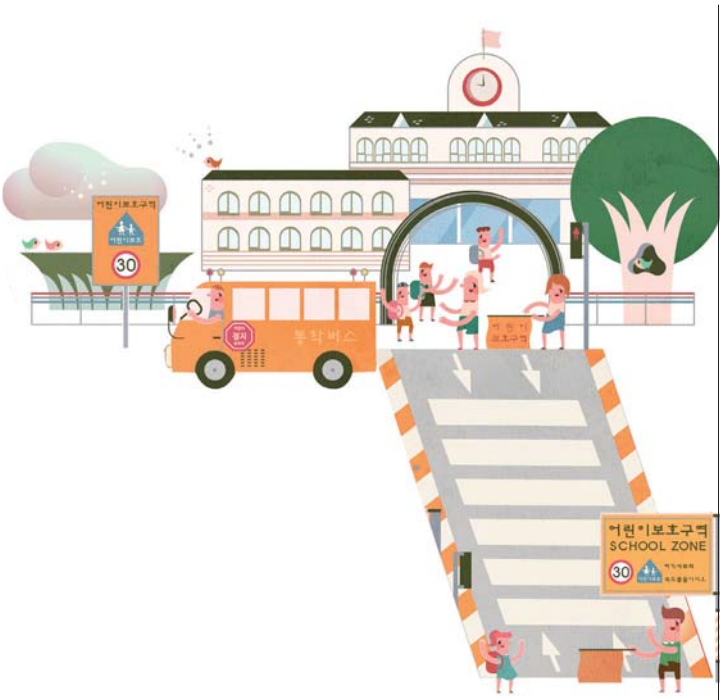
당선작 발표 2016. 9. 30.(금)
법제처 홈페이지 및 국민참여입법시스템 게재

시상일 2016. 10. 6.(목)
※ 당선작 발표 및 시상일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법제처 법령정비담당관실 Tel. (044)200-6576, 6579

8월의

법제 소식



심사경과보고서_ 법제처 행정법제국
|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02 • 불기소처분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08 •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관련 조문 정비

10 •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경우 요구되는 재직기간

14 **법령해석 사례**_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

20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_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부산광역시-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 현황과 이행 점검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4 **최근 입법동향**_ 법제처 법제지원단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행정심판 재결례_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28 •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34 •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38 **조세심판 결정례**_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42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_ 법제처 법제정보과
위험물품 소지자

새 법령 소개

법제소식

이용안내

법제소식
2016년 8월호 (통권 제 51호)

발행처 | 법제처
발행인 | 제정부
편집 | 대변인실(044-200-6518)
발행처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어진동, 법제처)
제작 |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031.906.7735
발간등록번호 | 11-1170000-000429-06

※ 법제소식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1

불기소처분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안 제31조제2항제2호)

글. 법제처 행정법제국



가. 원안의 내용

●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나 수사로 인하여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은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로서,

–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현 행	접 수 안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 략)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현 행	접 수 안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2. ———————————— ————————————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3)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삭 제〉
4)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삭 제〉**
5)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삭 제〉
라.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삭 제〉

나. 개정취지

● 현행 규정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1] 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 징계 결과와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 수사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여 주고 있으나,

–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동일한 비위행위를 원인으로 같은 항 제3호나 제4호에 따라 다시 직위해제처분 된 경우에 동일한 징계 또는 조사 ·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직위해제처분이 되었는지에 따라 산입 결과가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

● 또한, 공무원 징계 결과 및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 · 수사 결과 양쪽 모두에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만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요건을 강화하려는 것**임.

다. 검토 대상

● **현행 규정에**서 조사 또는 수사결과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접수안에서는 산입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불기소처분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 대하여 검토함.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 · 해임 ·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 ·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라. 검토의견

1)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불복방법

●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는 **총 5가지**[2] 로 ① **기소유예** ② **혐의없음** ③ **죄가안됨** ④ **공소권없음** ⑤ **각하**가 여기에 해당하며,

– 피의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기 위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 다른 불복방법은 없음.



2)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불기소처분) ① · ② (생 략)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 :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고소 · 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고소 · 고발장 제출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어 고소 · 고발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고소 · 고발 사건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고소 · 고발인과 피고소 · 피고발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소 ·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하고 수사와 소추할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

- 불기소처분 중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및 각하의 경우**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등으로서 유죄를 인정받은 경우와 비교하여 동등하다고 보기 어려움.
  - 다만, **기소유예의 경우에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3] 각 호의 사항(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다고 검사가 판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및 각하에 대하여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함.

3) 심사안 반영

-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현행과 같이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해당 비위사건으로 인한 직위해제처분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반영하도록 유지하되, 비난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소유예의 경우 등에는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에서 배제하도록 심사함.

3)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접 수 안	심 사 안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 략)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②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2. ———————————— ————————————
가. · 나.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음의 1) 및 2)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처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가)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다)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나)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다만,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다시 수사 및 기소되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심사경과보고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2

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관련 조문 정비

(안 제25조제1항)



가. 검토 배경

●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25조제1항[4] 은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을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같은 영 제31조제2항[5] 에서 **시보임용 기간을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이 승진소요최저연수에 포함되는지 해석상 문제가 됨에 따라, 해당 조문의 정비 필요성 여부를 검토함.

4) 「공무원임용령」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생 략)

5) 「공무원임용령」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1. · 2. (생 략)
3. 시보임용 기간
③ 삭 제
④ ~ ⑫ (생 략)

나. 검토의견

1)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부분의 정비 필요성

● '–아'는 ① 시간상의 선후 관계를 나타내거나 방법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② 까닭이나 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 어미 ③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하는 데 쓰는 연결 어미[6] 로서,

–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부분이** 그 자체의 의미를 지니는 절로 사용되어, **임용전 교육훈련 기간을 시보임용기간으로 간주한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시보임용의 면제 · 단축과 임용전 교육훈련의 경력산입이 별개의 제도로 운영되고 있고, 관련 예규에서 임용전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미산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7] 하고 있더라도, **해당 규정의 표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2) 법령정비 협의 및 심사안 반영

●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와 해당 조문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협의함

현 행	접 수 안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제24조에 따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 기간은 이를 시보로 임용되어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시보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25조(시보임용의 면제 및 기간 단축)** ① —————————— —— 교육훈련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라** —————————— ——— 시보임용기간을 단축 ————. ② (현행과 같음)

6)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7)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
Ⅲ. 채용후보자 임용전 실무수습
4. 실무수습 평가 및 임용
가. (생 략)
나. 임 용
(1) (생 략)
(2) 채용후보자의 교육훈련 및 실무수습 기간은 임용 후 호봉획정 및 경력평정에 반영하고, 시보기간에도 반영할 수 있음. 다만, **승진소요최저연수에는 미반영**함.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3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경우 요구되는 재직기간

(안 제57조의10제2항)

가. 원안의 내용

● 장기 재직한 공무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 · 연구 등을 할 경우 1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 12. 24. 공포, 2016. 6. 25. 시행)됨에 따라,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 자기 개발을 위한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공무원 재직기간을 5년 이상으로 정**하고, 해당 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동일한 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접 수 안
〈신 설〉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기간 · 직위해제 기간 및 강등 ·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나. 개정취지

●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기피부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용**될 우려와 **동시 많은 인력이 휴직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시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할 것을 요건으로 함.

다. 검토 대상

● 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71조[8] 제2항제7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 연구 등을 하게 된 때"에 자기개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71조(휴직) ① (생 략)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 · 연구 등을 하게 된 때
③ · ④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심사경과보고서



– 대통령령에서 법률에 위임에 따라 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재직기간을 정하면서, **최초 사용과 재사용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다르게 정한 것**에 대하여 **위임 범위의 일탈 여부와 형평성 문제의 소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라. 검토의견



1) 위임 범위의 일탈 여부

● 「국가공무원법」에서 자기개발휴직을 위하여 필요한 재직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최초 사용은 "5년 이상"을, 재사용은 "10년 이상"을 **필요 재직기간으로 정한 것**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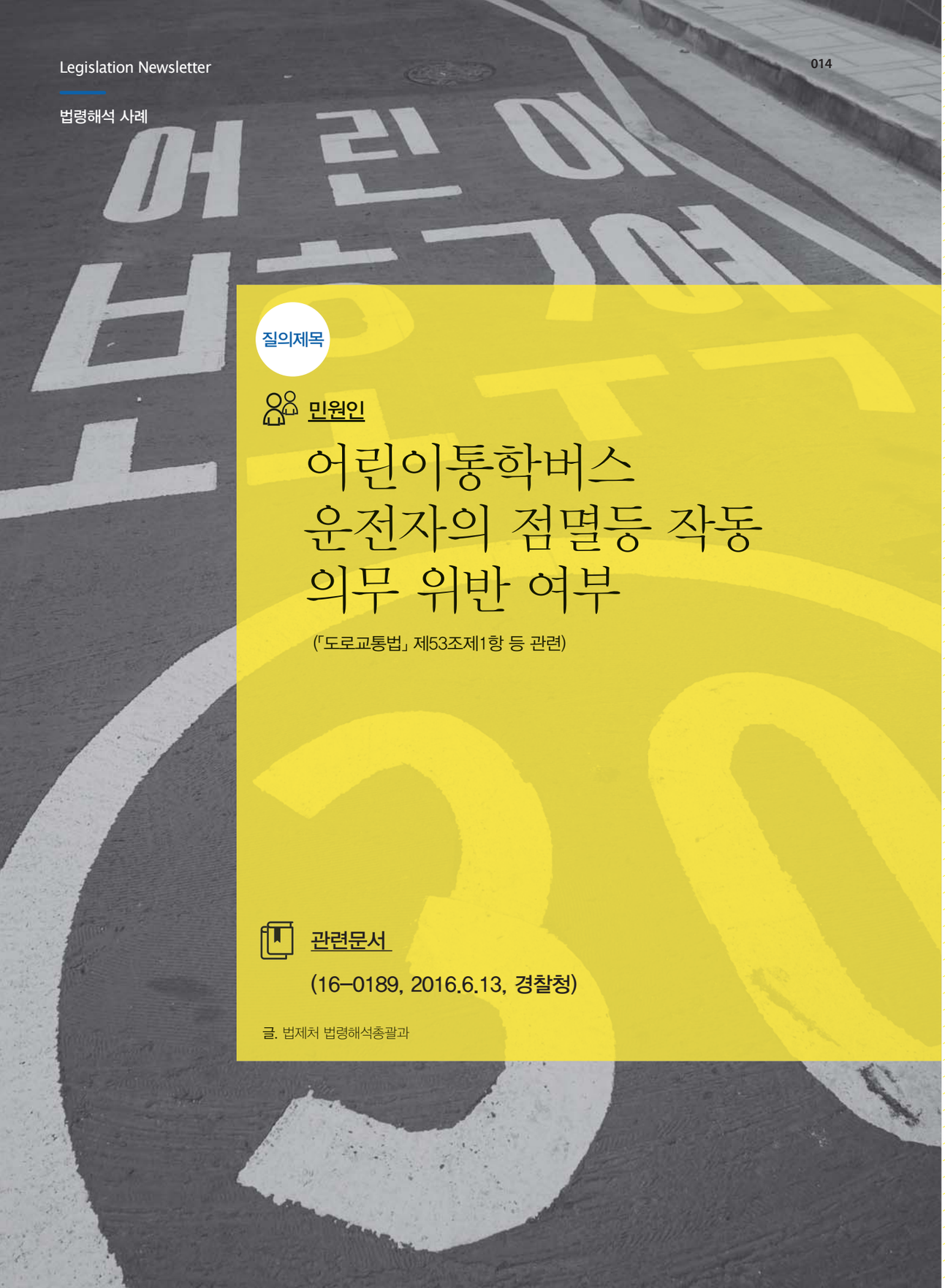
– 같은 법 제71조제5항에서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최초 사용과 재사용을 구분하여 정한 것**이므로,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의 입법**이라고 보여짐.

2) 형평성 문제의 소지 여부

● 휴직에 필요한 재직기간을 정하면서 최초에는 5년을, 재사용에는 그 두배인 10년을 요구하는 것은 동일한 공무원 재직기간을 휴직 요건으로 정하면서, 그 휴직사용이 최초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반영하는 것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가 있으나,

– ① 휴직이 처음인지 여부를 두고 차이를 두는 것이지 **공무원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은 아니라는 점** ② 주기를 일괄 5년으로 정할 경우 기피부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오용되**거나, 일시에 많은 인력이 주기적으로 휴직하여 **인사운영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는 점 ③ 인사혁신처에서 해당 휴직을 위한 재직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하였으나, 제도의 초기 정착과 정부의 고용 정책 뒷받침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최초 사용에 한하여 5년으로 정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을 수용함**.





질의제목

민원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의 점멸등 작동 의무 위반 여부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 등 관련)

관련문서

(16-0189, 2016.6.13, 경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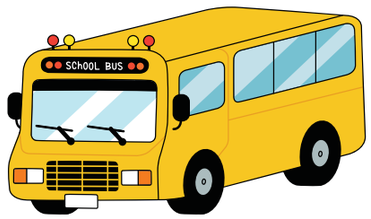
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1. 질의요지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



2. 회답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도로교통법」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3. 이유

「도로교통법」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이하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라 함)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도로교통법」제5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하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라 함)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로교통법」제51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인 경우에는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통흐름에 다소 방해가 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에게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도록 어린이나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특별한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도로교통법」제53조제1항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의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전제로서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점멸등 등의 장치를 반드시 작동할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점멸등 등의 장치가 작동되면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에게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가 발생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와 같은 교통흐름의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는 경우에는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까지 부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는「도로교통법」제53조제1항의 문언상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외에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무만을 부과한 것이므로 어

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더라도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51조제1항 및 제53조제1항은 모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와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인바(1997. 8. 30. 법률 제54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이유서 참조), 이와 같은 어린이 및 유아 보호의 취지는 제5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주변운전자의 일시정지 및 서행 의무와 그러한 의무의 전제로서 제53조제1항에 따른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이 결합되어야 온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에는 주변 차량의 정차 및 서행으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소극적 차원에서 점멸등 등의 장치를 남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어린이나 영유아가 버스에서 타고 내릴 때 그 사실을 주변 차량 운전자들에게 미리 알림으로써 어린이와 영유아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려는 적극적 차원에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시킬 의무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부과된 의무에 어린이나 영유아의 승하차 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시킬 의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을 때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는 경우보다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가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 어린이나 영유아가 위험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지 않을 때 점멸등 등을 작동한 경우만을 의무위반으로 보아 처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는 점에서,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이 어린이통학버스운전자에게 어린이와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 외에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의 무만을 부과한 것이라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 법령정비의견

- 「도로교통법」 제53조제1항이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와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인 점을 고려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하도록 해당 조항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의제목

부산광역시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관련문서

부산광역시 전략평가단-4123(2016. 6. 13)

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1. 질의요지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 등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지?

2. 의견

시장이 업무협약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유

「부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하 "부산시 조례안"이라 함) 제1조에 따르면 부산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 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같은 조례안 제6조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경우(제1호), 업무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제2호), 업무협약을 해지한 경우(제3호)를 규정하고 있고,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시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시에서는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추

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함)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의 쟁점은 부산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권한 배분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부산시 조례안은 부산시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자치조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관하여 상위법령에서 별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일부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이 규정은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포함)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업무의 간소화 · 표준화 · 과학화 및 정보화를 도모하고 행정기관 간 협업을 촉진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정으로서, 같은 규정 제45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행정협업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거나 행정협업과제의 목적, 협력 범위 및 기능 분담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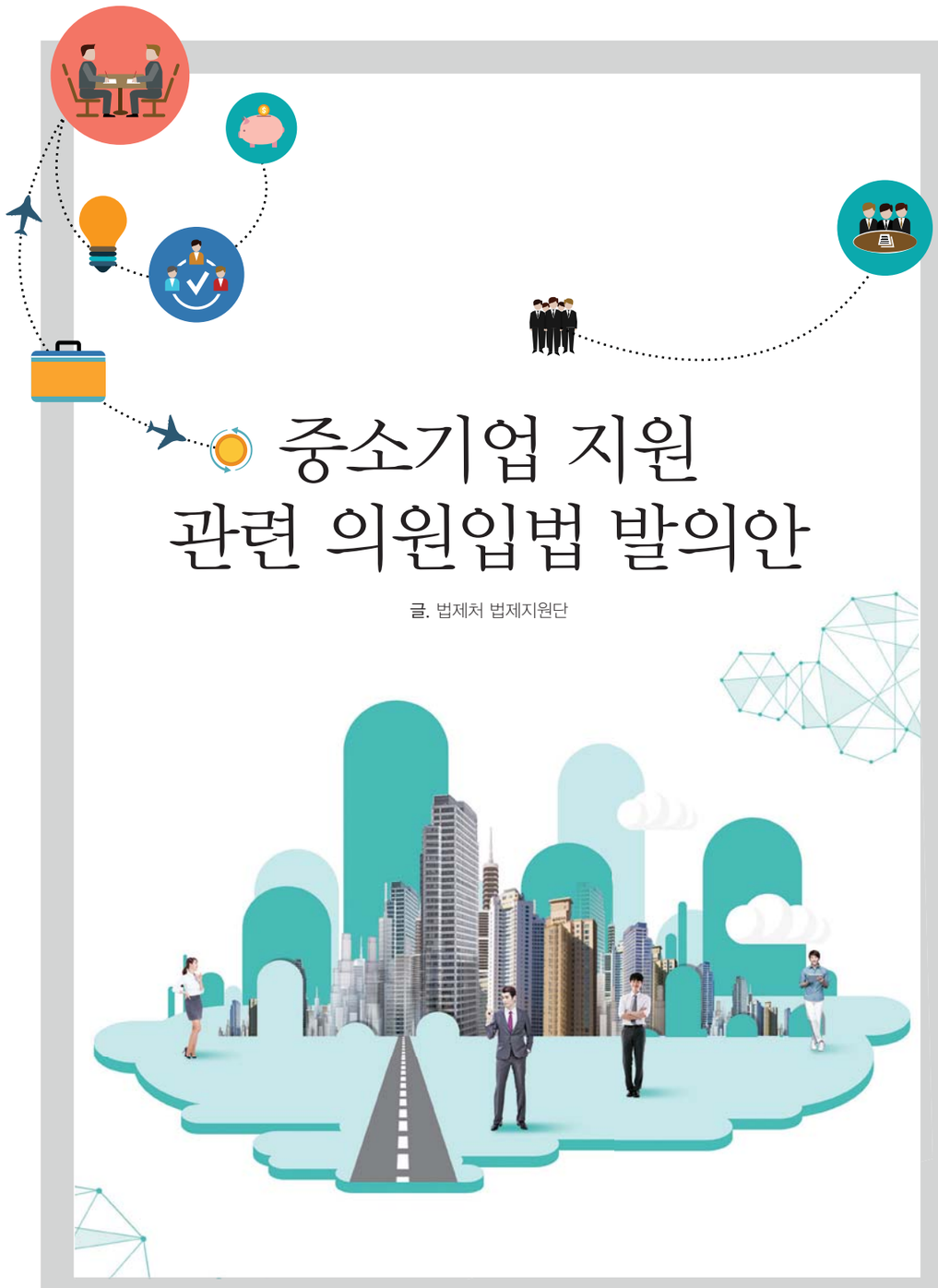
부산시 조례안에서는 제2조제1호에서 “업무제휴기관”을 부산시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 · 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으로, 같은 조 제2호에서 “업무협약”을 부산시가 국내외 업무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계약서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과 부산시 조례안의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등 관계법령에서도 이러한 업무협약 체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또한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가 다른 국내외 공공기관 등의 단체와 체결하는 협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업무협약 체결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속되는 고유한 권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법제처 2012. 12. 7. 회신 12-0399 의견 참조).

아울러, 부산시 조례안은 시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이후에 그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사후’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장이 시의회에 보고를 한 후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일률적으로 따라야 하는 등 법적 구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의회가 시장의 업무나 권한행사에 개입하는 다른 규정은 없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는 곤란한 점(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추57 판결 취지 참조), 또한 업무협약의 내용이 향후 부산시의 예산지출이 수반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면,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 확정 및 결산의 승인 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최종적인 확정권한이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시장의 업무협약 추진현황 등에 대한 사후 보고가 시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절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부산시 업무협약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향후 업무협약을 구체화하는 단계에서 시정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산시 조례안 제6조 및 제7조와 같이 시장이 업무협약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거나 관계법령에 직접적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업무협약 추진현황과 이행 점검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의원입법 발의안

글. 법제처 법제지원단

Ⅰ | 입안배경

중소기업은 고용 및 경제성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간한 「2016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3,542,350개로 전체 사업체의 99.9%를 구성하고 있고,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전체 고용의 87.9%의 차지하고 있다. 또한 지난 5년간의 고용창출에 대한 기여도면에서도, 중소기업은 지난 5년간 고용증가분의 88.8%를 기여한 반면, 대기업은 11.2%를 기여하였고, 지난 5년간 생산액 증가에 50.6%를, 부가가치 증가에 53.6%를 기여하였다.

따라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육성이 간절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20대 국회에서는 창업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구매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하에서는 20대 국회 개원 후 지금까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발의된 법안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Ⅱ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 공공기관의 청년창업기업제품 구매

현행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창업촉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이 창업하여 경영하는 청년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대하여 줄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창업기업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도록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구매계획을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대하려는 것임(황희의원 대표발의)

나. 창업지원 대상 확대

현행법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창업자로 규정하고 창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 개시 후 7년이 지나면 운전자금 대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창업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지원 혜택에서 배제됨에 따라, 조선해양산업 위기극복 종합지원 대책의 하나로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까지 창업자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김성찬의원 대표발의)

Ⅲ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 공공구매 가이드라인 마련

현행법은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 제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제도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공공구매제도를 두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여성기업제품 구매제도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제도를 두고 있음.

이처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가 다양하고 여러 법에 산재하여 규정되어 있다 보니, 각종 공공구매제도 간에 경합이 생기고 공공구매 업무 실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장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우선구매제도가 시행되는 등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청장으로 하여금 공공기관의 구매계획 · 실적의 작성 요령,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지침 등 공공구매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박정의원 대표발의).

나. 공공구매제도 적용대상 공공기관 확대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이에 정부는 공공구매제도를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구매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기관이 많아 제도의 외연 확대가 시급한 실정임.

특히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의무가 법적으로 전무한 상황임.

따라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을 공공구매제도에 적용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중소기업의 판로개척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현재의원 대표발의)

Ⅳ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진입시점이 30세 이후인 경우도 적지 않아 현재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청년연령은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청년 고용지원 확대 효과를 위해 현행 29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 청년층의 연령을 34세 이하로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채이배의원 대표발의)

Ⅴ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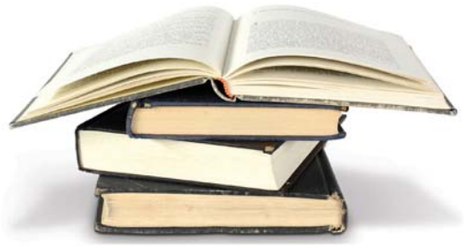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통해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침해현황 실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태조사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하고 미흡한 실정임.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시행령에 있는 실태조사 대상을 법률로 규정하여 중소기업기술보호 관련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조경태의원 대표발의)

Ⅵ | 입법전망

중소기업의 나라인 독일은 세계시장을 선도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을 1,307개나 보유하고 있다. 이는 23개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경우와 대비되며, 인구 1백만명당 히든챔피언의 수도 독일은 16개의 히든챔피언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0.5개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강소기업인 히든챔피언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등 혁신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이 간절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특히 선진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판로 개척이나 인력 부족 등으로 도태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 발의되고,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은 국가 재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가 재정상황에 대한 고려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_1]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 건	2015-○○○○○○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 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식품(대표이사 김○○)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장
심판청구일	2015. ○. ○.

주문

1. 피청구인이 2014. ○. ○. 청구인에게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처분 5,246만 3,630원 중 12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 ○. 청구인에게 한 5,246만 3,630원의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부당이득금 반환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2013. ○. ○. ~ 2014. ○. ○.) 내인 2014. ○. ○.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이 해당부서 직원감축에 따른 권고사직되었다는 이유로 2014. ○. ○. 청구인에게 기 지급받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 5,246만 3,630원에 대한 반환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마른김을 가공하여 조미김을 생산하여 전국에 납품하는 업을 주로 하고 있고,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김○이 입사할 당시에는 단순 회계 장부 정리 등의 업무를 하였으나 사업 확장에 따른 국내 신규대리점 및 수출 증가 등에 따른 부수적인 회계 관련 업무가 증가하여 성수기(설, 추석)에는 일일 평균 12~14시간 정도 근로를 할 수밖에 없었다. 김○의 업무 고충에 따라 3회에 걸쳐 협의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해 김○은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계속 구인광고 노력을 하였으나 신규채용이 어려워 기존직원을 권고사직할 이유가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인사부서 담당자가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신고할 때 김○의 상실신고사유를 찾기 힘들어 가장 유사한 신고사유를 자세히 기술하고 권고사직으로 입력 및 전송하였던 것은 담당자의 명확한 업무 착오이다. 설령 청구인이 감원방지기간을 미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고용환경 개선으로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실은 분명하므로 근로자 1명의 감원으로 인한 반환금은 근로자 1명분에 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므로 전체 지원금을 반환하라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감원방지기간인 2013. ○. ○. ~ 2014. ○. ○. 내인 2014. ○. ○. 근로자 김○을 퇴사처리하고 '해당부서 직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자세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한 업무착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감원방지기간 미준수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 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제145조
2013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법」제20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고용보험법 시행령」제1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임금과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지원의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의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 · 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해당 지원금 중 지급되지 않은 금액 또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에 대해서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 및 근로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데,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후 월평균근로자수)가,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직전달의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근로자수(개선 전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여야 하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고용환경개선 완료 후 증가근로자수 산정대상이 된 기간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 등이 지원금 지급요건으로 되어 있다. 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2(10인 미만 사업장은 2/3) 범위 내에서 5,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증가된 근로자수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함)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하며, 시설비용지원은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여 근로자수 5명이상 증가시 5,000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우선, 청구인은 근로자 김○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뒤 감원방지기간인 2013. ○. ○. ~ 2014. ○. ○. 내인 2014. ○. ○.에 근로자 김○을 퇴사처리하고 '해당부서 직원감축에 의한 권고사직'이라는 상세상실사유를 적어 피보험자격 상실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달리 이후에 이를 정정하였다는 객관적인 기록이 확인되지 않으며 관계기록 상 고용조정으로 인한 퇴사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감원방지기간 중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지원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설령 근로자 김○을 감원방지기간에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지원금 중 1인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해서 살펴본다.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 · 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게 된다.

행정청이 감원방지기간 중 고용조정으로 이직하게 된 근로자에 관하여 지급된 장려금 전부에 대하여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적법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소외인의 이직을 이유로 나머지 장려금 지급대상 근로자들에 대한 장려금 부분에 대하여까지 지급처분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을 고려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960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도 이러한 취지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반환 금액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금원에 한정되어야 하고, 금액을 산정할 때에는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임금의 일부 및 시설 설치비의 일부도 지원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지원금은 이에 근거한 것인바, 지원금의 기본취지는 근로자 수 증가를 통한 고용창출에 있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 설치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경우 근로자 김○을 제외하더라도 고용환경 개선으로 인하여 근로자 수가 7명 증가한 사실은 확인되므로 7명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고, 시설비용지원금은 '고용환경개선투자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5,000만원 한도로 하고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차등 지원하며 근로자수 5명이상 증가시 5,000만원을 한도'로 하므로 청구인 회사 근로자 수 증가가 7인으로서 5,000만원 한도에서는 시설비지원이 가능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시설비지원액 4,286만 3,630원도 그 지급요건을 준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가된 근로자 7인에 해당하는 지원금 및 시설비지원액까지 포함한 이 사건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공익상의 필요와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을 불이익과의 사이에 형평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범위는 청구인이 지급받은 전체 지원금액(5,246만 3,630원)이 아니라 그 중 정당하게 지원받을 지원금(총5,126만 3,630원)을 공제한 부분인 120만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반환명령 금액(5,246만 3,630원)에서 120만원을 제외한 5,126만 3,630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 · 부당하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_2]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사 건	2015-○○○○○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청 구 인	○○운수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피 청 구 인	중앙노동위원회
심판청구일	2015. ○. ○.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 ○. 청구인에게 한 1,12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 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 ○. 부당해고한 정○준(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중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 ○. ○. 청구인에게 1,120만원의 이행강제금(4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근로기준법」제33조제5항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부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한 날인 2012. 5. 30.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가사 이 사건 재심판정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2014. 7. 6. 이후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2014. 7.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 상의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은 청구인이 구제명령이 있음을 인식할 수 있는 판정서(이 사건 구제명령서) 송달일인 2012. 7. 6.로 해석함이 합리적인데, 구제명령을 한 날을 2012. 7. 6.로 볼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결정일인 2014. 6. 30.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가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처분이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규정의 해석에 관한 명확한 세부규정이나 지침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으로서는 이행강제금의 부과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두고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4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111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1조, 제13조



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근로기준법」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가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구제명령을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되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며,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33조제1항 · 제5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 징수하지 못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3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구체적인 이행강제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금액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 · 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 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같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르면, 확정된 구제명령이나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14. 6. 30. 부과결정되어 2014. 7. 18. 납입고지서가 발행되고 2014. 7. 18. 내부결재를 거쳐 2014. 7. 23.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으며, 또한 이에 앞서 이 사건 구제명령서는 2012. 7. 6.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사실 모두는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데,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1706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에 따르면,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 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 · 징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구제명령서를 송달받은 2012. 7. 6.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최종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은 2014. 7. 6.이 되지만, 이 사건 처분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은 이 사건 구제명령을 한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4. 7. 23.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을 위반한 하자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권력적 · 부담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은 법문언 그대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최대 2년간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은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중요한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것임에도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2년을 초과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33조제5항에는 이행강제금을 최종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의 기산점으로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라고 명확히 되어 있어 이것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스스로 자신의 홈페이지 상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란에 동 내용을 2008. 4. 7.부터 게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외관상으로도 명백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조세심판 결정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사 건	조심2016중1000 (2016.6.16.)
세 목	종합소득세
결 정 유 형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XX년경 시행사인 ○○건설 주식회사(“○○건설”)와 경기도 ○○시 ○○동 21필지 지상에 건축되는 ○○○아파트(“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사가 입주예정일까지 공사준공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건설을 상대로 이 건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수분양자인 청구인들에게 분양대금 원금, 위약금, 분양대금 원금 및 위약금에 대한 이자(「민법」상 법정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분양계약 해제에 따라 지급받은「민법」상 법정이자가 포함된 위약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송비용 등 직접 비용만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들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 · 고지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X.XX. 심판청구를 제기

2 청구인 주장

「민법」 제548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불이행에 기한 법정해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그 수령한 금전을 반환함에 있어 이를 받은 때로부터 이자를 부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6.9. 선고 2000다9123 판결, 같은 뜻임),

동 이자는 이자의 일종으로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3 처분청 의견

「민법」 제548조 제2항은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의 양 당사자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하면서 금전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각 당사자가 당초 지급하였던 금전에 가산하여 수수한 5%의 이자는 당초 지급하였던 금전 그 자체가 아니라, 본래의 계약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에 해당하므로 동 이자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4 관계법령 등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해서는 그 당첨금품 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1호 · 제2호 및 제27조 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3.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3)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5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에는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당초 이 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라 청구인들이 동 계약상 납입한 분양대금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인 점, 동 지급은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 계약의 상대방인 ○○건설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이 건 판결을 원인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분양대금 원금에 대한 민법상 법정이자는 동 규정의 '위약금과 배상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글. 법제처 법제정보과

위험물품 소지자



법제처에서는 2008년 초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재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의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 구축하여 **2016년 7월 현재 서술형 229건, 사례형 18건 등 총 247건**의 생활분야에 관한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서비스 중인 생활분야에 대한 주요 궁금 사항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의 형식을 빌려 그 주요내용을 차례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Q

A

Q1 한 온라인 쇼핑몰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범죄로 호신용품 판매가 지난해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호신용품으로 사용하는 분사기와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분사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催淚) 또는 질식 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를 말하며, 전자충격기"란 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거나 인명에 위해를 주는 순간적인 고압전류를 방류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합니다. 분사기나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면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 허가

- 분사기나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면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분사기나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분사기나 전자충격기의 소지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분사기 · 전자충격기 · 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
  2. 신체검사서
  3. 분사기 · 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가로 2.5㎝, 세로 3㎝ 크기의 사진

- 건설공사 · 경비 등을 위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분사기나 전자충격기의 소지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1. 마취총 · 산업용총 · 가스발사총 · 분사기 · 전자충격기 소지허가 신청서
  2. 실제사용자 전원의 신체검사서(운전면허가 있는 분사기 · 전자충격기 사용자의 경우를 제외함)
  3. 분사기 · 전자충격기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정관 및 대표자와 임원의 명단



Q2

분사기나 전자충격기가 호신용품이라고 해서 누구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닐텐데요.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2

20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 등의 사람은 분사기나 전자충격기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분사기나 전자충격기의 소지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20세 미만인 사람
2. 심신상실자, 마약 · 대마 ·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또는 뇌전증 환자로서 치매, 정신분열병, 분열형 정동장애(情動障碍),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총포의 안전한 사용을 확신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벌금형의 선고 또는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7.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①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형법」 제114조)
   ② 상해죄 · 존속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 제2항), 폭행죄 ·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 및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③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의 죄(「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장애인인 아동 · 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
8.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죄(이하 "음주운전 등"이라 함)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9. 도검 등의 소지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10. 다른 사람의 생명 · 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사람



Q3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사기나 전자충격기가 타인의 공격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시 준수사항을 숙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분사기나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A3

네. 그렇습니다.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고, 도난이나 분실 시 신고해야 하며, 성능 개조 검사를 받는 등의 준수사항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용도 외 휴대·사용·운반 금지

- 분사기나 전자충격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받은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경우와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 등을 휴대 · 운반하거나 사용하면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소지 허가가 취소되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회·시위 시 휴대·사용 금지

- 집회 · 시위의 주최자,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는 분사기나 전자충격기를 휴대 ·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 · 사용하게 하면 안 됩니다.
- 집회 · 시위의 주최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집회 · 시위의 질서유지인 및 참가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위장 또는 혼합포장 후 소지·운반 금지

- 분사기나 전자충격기를 위장하거나 다른 물건과 혼합 포장하여 소지하거나 운반 · 발송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도난·분실 시 신고 의무

- 분사기나 전자충격기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지체 없이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15일 동안 소지 허가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분사기·전자충격기 검사 의무

-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요구하는 경우 분사기 및 전자충격기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구조형식의 변형이나 결함여부, 제조번호의 타각 변경 등의 결함여부 및 손잡이, 몸통원형 유지 및 전류유지상태 등 성능개조 여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4

최근 드물지 않게 수렵용 총기로 인한 사고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총기 사고는 인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소지 요건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A4

그렇습니다. 총포를 소지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포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 소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합니다.

소지 허가 신청 의무

- 수렵용 총포를 소지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지 허가를 받지 않고 수렵용 총포를 소지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받게 됩니다.

제출서류

- 수렵용 총포의 소지 허가를 신청하려면 다음의 서류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총포 소지 허가 신청서
  2. 신체검사서
  3. 총포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1종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또는 제1종 수렵면허증
  5. 가로 2.5㎝, 세로 3㎝ 크기의 사진
  6. 총포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나 소견서
  7. 병력 신고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교육 이수

- 수렵용 총포로 엽총 및 공기총의 소지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그 허가를 받기 전에 다음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발급받으며, 5년마다 동일한 내용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과목		교육시간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 단속법규 와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규	1. 소지 · 운반의 제한 2. 허가갱신절차 3. 보관 · 휴대 · 운반 시의 제한 4. 수렵절차 및 제한 5. 허가목적 외 사용금지 6. 성능개조금지	30분
엽총 · 공기총의 취급실기	1. 성능 및 조작방법 2. 사격술 3. 안전관리 수칙 4. 도난 · 분실 · 안전사고 발생 시 조치요령	30분

Q5

수렵을 하려면 총기 소지 면허 외에도 수렵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수렵면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총포를 사용하여 수렵하려는 사람은 제1종 수렵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수렵면허를 받으려면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수렵면허 취득 결격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성년자
2. 심신상실자
3. 정신질환자
4. 마약류중독자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수렵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수렵면허시험

■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가 실시하는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1.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2. 야생동물의 보호 ·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4.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수렵강습

■ 수렵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다음의 강습을 받아야 합니다.



강습과목	강습시간
수렵의 역사 · 문화	1시간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1시간
야생동물의 보호 · 관리에 관한 사항	1시간
수렵도구의 사용법, 안전수칙 및 사고발생 시 조치방법	1시간(1시간 이상의 실기 강습 별도로 실시함)

Q6

총기 소지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허가받은 총기를 소지자가 원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수렵을 위해 총기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6

권총 · 소총 · 기관총 · 포 · 엽총 · 공기총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권총 등과 그 실탄 또는 공포탄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을 위해 해당 총기를 사용하려는 경우 보관해제를 신청하여 반환받아야 합니다.

총포의 보관의무

■ 권총 · 소총 · 기관총 · 포 · 엽총 · 공기총(해당 권총 등의 실탄 또는 공포탄을 포함, 이하 "권총 등"이라 함)의 소지 허가를 받은 사람은 해당 권총 등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에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총포의 보관해제

■ 권총 등의 소지자는 권총 등을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수리 또는 매매하는 경우 및 그 밖에 허가관청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보관해제를 신청하여 해당 권총 등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수렵기간 중 경찰관서에 보관 중인 총기를 해제 받아 수렵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총포를 보관 중인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2. 총포보관증명서 원본
3. 수렵야생동물포획승인증 사본
4. 수렵면허증 사본
5. 보관총기(부품)해제 신청서

Q7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사용 허가 없이는 그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킬 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7

네 그렇습니다.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화약류의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 허가 신청 의무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사람을 제외하고,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화약류의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화약류를 발파하거나 연소시키려는 사람이 화약류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이나 그 밖의 옳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출서류

■ 화약류의 사용 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화약류의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사용 장소가 2개소 이상인 때에는 주된 사용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꽃불류	1.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서 2. 사용순서대장 3. 사용 장소 및 그 부근약도
꽃불류 외의 화약류	1. 화약류사용(소지) 허가신청서 2. 사용계획서 3. 사용하고자 하는 화약류저장소의 설치허가증 사본

등록면허세

■ 화약류의 사용 허가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4종 면허에 해당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구분	인구 50만명 이상 시	그 밖의 시	군
제4종	27,000원	15,000원	9,000원

Q8

화약류 사용 허가가 취소되었습니다. 소지하고 있는 화약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8

화약류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화약류를 허가관청에 임시로 영치하고 허가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화약류를 양도나 증여하거나 폐기 또는 매각해야 합니다.

허가 취소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가 취소됩니다.
· 화약류의 소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화약류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30일이 지난 경우
·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재해 예방 또는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 취소 후 조치

■ 화약류의 임시 영치 : 화약류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화약류(법원의 재판 또는 검사의 결정에 따라 몰수되거나 국고에 귀속된 경우는 제외)의 소유자는 그 화약류를 해당 허가관청에 임시 영치해야 합니다.

■ 허가증 반납 : 화약류의 사용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증을 그 허가관청에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화약류의 양도 · 양수, 증여 및 폐기 : 화약류의 사용 허가가 취소되어 그 화약류를 허가관청에 임시로 영치한 사람은 6개월 이내에 화약류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양도 · 증여하거나 폐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 포기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화약류의 매각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관청은 해당 화약류를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할 수 없거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 최고 또는 공고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도 그 화약류에 대한 반환신청이 없는 경우
√ 처리기간이 끝난 후 부패 · 변질될 염려가 있는 경우
√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경우 등 계속적인 보관이 곤란한 경우

Q9

화약류 사고 발생 시 그 피해 정도가 다른 위험물품에 비해 훨씬 큽니다. 화약류 소지 · 사용 시 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9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화약류 사고 발생을 막고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약류의 저장 의무

■ 일정한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제외하고, 화약류는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화약류는 화약류저장소, 수중저장소 및 화약류저장소 외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저장 및 취급방법은 「총포 · 도검 ·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약류의 안정도 시험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약류의 안정도를 시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을 소유한 경우
2.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폭약을 소유한 경우
3. 제조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화공품을 소유한 경우
4.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화약류 안정도 시험의 명령을 받은 경우



■ 위의 화약류에 대해 다음의 방법으로 안정도를 시험합니다.

시험대상 화약류	시험방법
제조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	유리산시험 또는 내열시험
제조일로부터 2년이 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질산에스텔 및 그 성분이 들어있는 화약 또는 폭약	소지한 때와 그 후 3개월마다 내열시험
제조일로부터 3년이 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질산에스텔의 성분이 들어 있지 않은 폭약	소지 한 때와 그 후 매년 유리산시험 (4시간 이내에 청색리트머스시험지가 전면 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가열시험을 함)
제조일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제조일이 분명하지 않은 화공품	납판시험 · 점화전류시험 · 내수시험 · 마찰시험 · 내정전기시험, 장착 · 발사시험, 점화장치작동시험 · 연소시험, 점화연소시험 · 사용시험 등의 시험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선임

■ 쏘아 올리는 꽃불류를 사용하거나, 화약 또는 폭약을 1개월 동안 50㎏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사용하는 화약류 사용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면허를 받은 사람 중에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화약류 사용자가 선임해야 할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장 또는 사용합계량	화약류관리보안책인자의 자격
월 중 2 t이상의 화약 또는 폭약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 중 50㎏ 이상 2t 미만의 화약 또는 폭약	2급 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월 중 50㎏ 미만이나 6개월 이상 장기 사용 시	3급 · 2급 또는 1급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면허취득자



새 법령 소개

8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을 알려 드립니다.

-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어르신들에게 관련 정보 제공
-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 · 금지 가능
-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8월에 총 12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1일 • 국가가 구직급여 수급자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75퍼센트 지원 (「고용보험법」).

4일 •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의 정보 제공 (「기초연금법」).
• 수업중 폭행 · 모욕 피해 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교원지위법」).
•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 · 금지 가능 (「어린이식생활법」).
•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유료도로법」).

18일 •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30일 • 자연휴양림 저장장소 외에서 취사 · 흡연시 과태료 부과 (「산림휴양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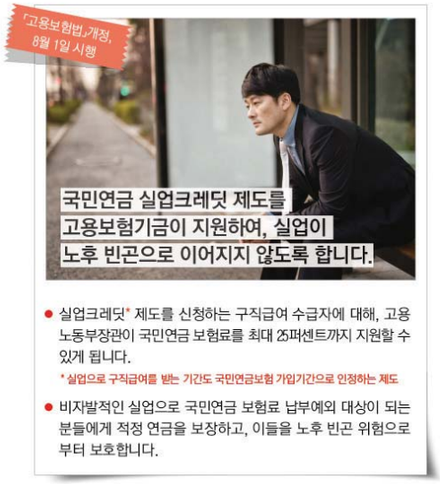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고용보험기금이 최대 25퍼센트 지원

「고용보험법」 개정, 8월 1일 시행

-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산입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에 '실업크레딧'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신청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현행) 실업기간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음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 예외가 되는 비자발적 실업자들에게 적정 연금을 보장하고, 노후 빈곤 위험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 법령 소개

어르신들에게 연금액과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 제공

「기초연금법」 개정, 8월 4일 시행

- 어르신들이 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당하게 기초연금 수급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5세 이상인 자에게 기초연금의 지급대상, 연금액 및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 등 기초연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수업 중 폭행 · 모욕 피해 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마련

「교원지위법」개정, 8월 4일 시행

- 유치원 및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저지른 폭행, 모욕 등 침해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소속 학생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함께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 제한 · 금지 가능

「어린이식생활법」개정, 8월 4일 시행

- 학교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고카페인 함유 식품*도 포함된다.

  * 카페인을 인위적으로 첨가하였거나 카페인을 함유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 · 가공한 액체축산물로, 카페인 함량이 ㎖당 0.15㎎이상인 경우

  - 이에 따라 고카페인 함유 우유제품도 학교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면서, 초 · 중 · 고등학생들의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중간정차 없이 최종 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일괄수납

「유료도로법」개정, 8월 4일 시행

- 「유료도로법」개정으로, 중간정차 없이 최종요금소에서 요금을 한번에 납부하도록 하는 '무정차 통행료 납수시스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 영상촬영을 통해 차량 경로를 파악하여 연계구간에서의 중간정차 없이 최종 출구에서 통행료를 일괄 수납하는 시스템으로, '16. 11월 시행 예정

  - 하이패스 미부착 차량이 서로 다른 유료도로를 연속하여 통과하는 경우 중간에 정차하여 통행료를 납부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통행시간 단축으로 도로정체가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동식 크레인과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도 안전검사 대상에 추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개정, 8월 18일 시행

- 산업현장에서 이동식 기구와 관련된 추락 사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에 관한 성능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해 · 위험기계 등에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高所作業臺 / 화물 · 특수차 탑재)를 추가한다.

  * 안전검사는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실시



자연휴양림 지정장소 외에서 취사 · 흡연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약칭) 「산림휴양법」개정, 8월 30일 시행

- 자연휴양림에서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단속규정이 마련되면서, 앞으로 자연휴양림 등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취사 및 흡연행위를 하거나,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 이를 위반하여 취사 및 흡연행위시에는 50만원 이하, 오물 · 쓰레기 투기시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법령 소개

8월 시행법령 (2016. 7. 30. 기준)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8호	국토교통부	8. 1.
2	고용보험법	법률	제14233호	고용노동부	〃
3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61호	고용노동부	〃
4	고용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52호	고용노동부	〃
5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7402호	기획재정부	〃
6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53호	금융위원회	〃
7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14호	금융위원회	〃
8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2호	보건복지부	〃
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제75호	행정자치부	〃
10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4015호	국토교통부	8. 4.
11	건축법	법률	제14016호	국토교통부	〃
12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44호	국토교통부	〃
13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65호	국토교통부	〃
14	검역법	법률	제13980호	보건복지부	〃
15	결핵예방법	법률	제13981호	보건복지부	〃
16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56호	문화체육관광부	〃
17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82호	보건복지부	〃
18	공공외교법	법률	제13951호	외교부	〃
19	공중위생관리법	법률	제13983호	보건복지부	〃
20	관광진흥법	법률	제13958호	문화체육관광부	〃
2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936호	교육부	〃
22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제13985호	보건복지부	〃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1호	보건복지부	〃
2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법률	제13987호	보건복지부	〃
25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14202호	문화체육관광부	〃
26	기초연금법	법률	제13988호	보건복지부	〃
27	기초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89호	보건복지부	〃
28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1호	보건복지부	〃
29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8호	보건복지부	〃
30	도서관법	법률	제13960호	문화체육관광부	〃
31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81호	문화체육관광부	〃
32	문학진흥법	법률	제13961호	문화체육관광부	〃
33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13964호	문화재청	〃
34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60호	문화재청	〃
35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72호	문화재청	〃
36	법무사규칙	대법원규칙	제2668호	법원행정처	〃
37	법무사법	법률	제13953호	법무부	〃
38	사립학교법	법률	제13938호	교육부	〃
39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4호	보건복지부	〃
40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법률	제13995호	보건복지부	〃
4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5호	보건복지부	〃
42	사회복지사업법	법률	제13996호	보건복지부	〃
4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7호	보건복지부	〃
44	스포츠산업 진흥법	법률	제13967호	문화체육관광부	〃
45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98호	보건복지부	〃
46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74호	보건복지부	〃
47	식품위생법	법률	제14022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48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8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49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8호	문화체육관광부	〃
50	암관리법	법률	제14000호	보건복지부	〃
51	암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1호	보건복지부	〃
5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법률	제14024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5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9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54	영유아보육법	법률	제14001호	보건복지부	〃
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69호	문화체육관광부	〃
56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2호	보건복지부	〃
57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14호	보건복지부	〃
58	유료도로법	법률	제14017호	국토교통부	〃
59	의료급여법	법률	제14003호	보건복지부	〃
60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10호	보건복지부	〃
61	의료급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275호	보건복지부	〃
62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71호	문화체육관광부	〃
6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40호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
64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3972호	문화체육관광부	〃
6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47호	문화체육관광부	〃
66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법률	제14004호	보건복지부	〃
67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5호	보건복지부	〃
68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09호	보건복지부	〃
69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15호	보건복지부	〃
70	장애인연금법	법률	제14006호	보건복지부	〃
71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33호	보건복지부	〃

새 법령 소개

연번	법령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소관부처	시행일
7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법률	제14007호	보건복지부	〃
7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420호	보건복지부	〃
7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90호	보건복지부	〃
75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08호	보건복지부	〃
76	지역보건법	법률	제14009호	보건복지부	〃
77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법률	제13942호	고용노동부, 교육부	〃
78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76호	문화체육관광부	〃
79	초 · 중등교육법	법률	제13943호	교육부	〃
80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제14025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81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00호	식품의약품 안전처	〃
82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44호	교육부	〃
83	평생교육법	법률	제13945호	교육부	〃
8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947호	교육부	〃
85	학술진흥법	법률	제13949호	교육부	〃
86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법률	제14010호	보건복지부	〃
8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332호	보건복지부	〃
88	한국수화언어법	법률	제13978호	문화체육관광부	〃
89	혈액관리법	법률	제14012호	보건복지부	〃
90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014호	보건복지부	〃
91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395호	보건복지부	8. 6.
92	건설기계관리법	법률	제13468호	국토교통부	8. 12.
9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341호	국토교통부	〃
94	건설산업기본법	법률	제13469호	국토교통부	〃
9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9호	국토교통부	〃
96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3474호	국토교통부	〃
97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3676호	국토교통부	〃
98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제13786호	국토교통부	〃
99	자동차관리법	법률	제13486호	국토교통부	〃
10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869호	국토교통부	〃
101	자동차등록령	대통령령	제26990호	국토교통부	〃
102	주택법	법률	제13805호	국토교통부	〃
103	해외건설 촉진법	법률	제13494호	국토교통부	〃
104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76호	국토교통부	〃
10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462호	행정자치부	〃
10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4030호	산업통상자원부	8. 13.
107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7307호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자치부	〃
108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7호	산업통상자원부	〃
10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7호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18호	행정자치부	〃
111	도시가스사업법	법률	제12065호	산업통상자원부	8. 14.
1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50호	고용노동부	8. 18.
11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6985호	고용노동부	〃
114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198호	문화체육관광부	8. 30.
115	교육기본법	법률	제14150호	교육부	〃
116	군인사법	법률	제14180호	국방부	〃
1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08호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
118	동북아역사재단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51호	교육부	〃
11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4271호	중소기업청	〃
120	병역법	법률	제14183호	국방부,병무청	〃
121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87호	행정자치부	〃
1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법률	제14188호	행정자치부	〃
123	사립학교법	법률	제14154호	교육부	〃
124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268호	산림청	〃
1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3660호	보건복지부	〃
126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4272호	중소기업청	〃
1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77호	법무부	〃
12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법률	제14159호	교육부	〃
129	평생교육법	법률	제14160호	교육부	〃
13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167호	교육부	〃

위 법령의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시행법령 미니 홈페이지 (www.moleg.go.kr/monthlyla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달력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현장간담회란,** 정부 3.0'의 일환으로 법령정비과정에서 일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정책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는 자리

법제처, 첨단산업 관련 기업 대상 현장 간담회

플랜트 공사 수출대금 관련, 수출 실적 인정기준 명확화
지방 중소기업의 병역 지정업체 선정 기준 완화 등 건의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27일 **충남 테크노파크**(충남 천안시 소재)에서 첨단산업 관련 기업 등과 함께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의견 수렴'**이란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날 간담회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윤창현 충남 테크노파크 원장, 이상백 충남 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 등을 비롯하여,
  - 장영수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이은광 (주)한화 아산1사업장 상무이사, 장화순 (주)태림전기 대표이사, 박종복 (주)케이에스비 회장, 구연찬 장암칼슨 회장 등 지역 기업인 20여명이 참석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을 살펴 보면,
  - 현실적으로 석사학위 이상의 우수인력 고용이 어려운 지방 중소기업의 형편을 고려하여 전문연구요원 병역 지정업체 선정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기능성화장품 제조업체),
  - 외국에서 플랜트 건설공사를 한 경우, 국외에서 입금되는 외화를 획득하는 경우만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고, 국내 은행을 통해서 대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해석* 집행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충남 북부상공회의소),
  - 그 밖에 공공기관의 물품, 용역 및 공사 구매 시, 여성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취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사후점검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공사 전문 여성기업) 등이 있었다.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

- 제정부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신기술이나 아이디어를 선점하는 자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 "시대에 뒤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첨단산업의 신기술 발전 등을 촉진하도록 관련 법 규정을 정비하고,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 부설 자연계 연구기관의 경우,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담연구요원 2명 이상을 확보해야 전문연구요원 병역 지정업체로 선정 가능

*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 고시) 제26조에 따라 수출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데, '은행'에서는 "외국환은행의 입금액"을 국외에서 입금되어 획득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해석

법제처, 로스쿨 학생 대상 간담회

2016년 하계 로스쿨 실무수습(제14기) 과정 진행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11일부터 2주일 동안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8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14기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을 실시했다.

- 로스쿨 실무수습은 **법제실무 역량을 높여 전문 법조인 양성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높이고자, 법령 입안 · 심사 및 해석 등의 교육과 현장의 입법 실무를 병행하는 등 법제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도록 구성 · 운영했다.
  - 특히, 이번 실무수습에서는 법제(法制)전문기관인 법제처의 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체험하기 위해 부처별 담당 법제관실에서의 심사 참여 등 실무과정의 비중을 대폭 확대했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여 그간의 실무수습에 대한 소감을 듣고, **법제처 로스쿨 실무수습 과정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수습생 신현규 씨(한국외국어대학교 로스쿨)는 "밖에서 보는 추상적인 법제업무라는 것이 치밀한 심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보호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고,
  - 수습생 이윤정 씨(부산대학교 로스쿨)는 "법령해석 업무를 경험하면서 법령해석이 국민의 민원 해소 및 규제 완화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 이에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법의 올바른 해석과 집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좋은 입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 "로스쿨 졸업 후 공직을 비롯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에서 법치주의의 훌륭한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처,
남북법제(통일법제) 연구 간담회 개최

최근 북한 헌법 개정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 논의



-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7월 22일 오전 프레지던트 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2016년 제4회 남북법제 연구위원회'를 개최했다.
  - 이번 회의에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을 포함해, 제성호 중앙대 교수, 박정호 국민대 교수, 송인호 한동대 교수,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이찬호 변호사, 한명섭 변호사,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장 등이 참석하여 최근 헌법 개정에 따른 북한의 정치구조 변화 등 주요 법적 과제에 관하여 논의했다.
  -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국무위원회 신설 등에 따른 북한의 정치구조 변화 및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전시 국가방위위원회에 대한 지도권(指導權) 등 최근 북한 헌법의 개정사항을 검토했다.

- 아울러, 이번 북한 헌법 개정에 따른 북한 현행 법제도의 변화 가능성 및 대한민국 현행 법제와의 통합 방안 등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회의에 참석하여, "남북법제 연구는 단순히 남북 법령체계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해외의 통일사례와 남북관계 및 국제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전제된다"면서,
  - "법제처가 지난 20여년 동안 남북법제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만큼, 통일부, 법무부 등과 함께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남북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편, 법제처는 1999년부터 북한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법령의 비교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고,
  - 2016년도에는 남북한 재난관리 분야 법제통합방안, 북한지역 체제전환을 위한 개혁개방 법제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등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령의 바람직한 통합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 문의 : 법제정보과
TEL. 044-200-6789

법제처 SNS

twitter.com/Molegtwit
www.facebook.com/Moleg.Korea
moleg.tistory.com



■ 문의 : 대변인실
TEL. 044-200-651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제공정보 |

음식점(창업 · 운영), 아파트생활, 인터넷 이용자, 전자금융범죄, 부동산 경매, 임산부, 이혼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법령정보

| 이용방법 |

http://oneclick.law.go.kr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 문의 : 법제정보과
TEL. 044-200-6790

민원인의 해석요청 절차

민원인은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후 그 회신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 **아래 중 하나의 절차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01 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 법제처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한 후, 그 **중앙행정 기관**이 **법제처**에 법령 해석 요청

02 민원인 ▸ 중앙행정기관 ✕ 민원인 ▸ 법제처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하였으나, 그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는다고 통보한 경우,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03 민원인 ▸ 1개월 ✕ 중앙행정기관 ▸ 민원인 ▸ 법제처

민원인이 해당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지 **1개월**이 지난 후에도 그 **중앙행정기관**이 법제처 법령 해석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이 직접 **법제처**에 법령해석 요청

■ 문의 : 법령해석총괄과
TEL. 044-200-6707

사전입법지원 제도 이용안내

| 사전입법지원 요청권자 |

- 사전입법지원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중앙 행정기관 법령안 담당자

| 사전입법지원 대상 |

- 연도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 공약 · 국정과제 이행 법령안, 일자리 창출 관련법령안
- 다수 부처 관련 융합 · 복합 법률안, 이해관계가 복잡한 쟁점 법령안
- 손톱 밑 가시 등 정비대상 법령안, 하위법령 제때마련 대상 법령안

■ 문의 : 법령입안지원과
TEL. 044-200-6834 leg.sd@korea.kr

자치법규 지원제도 이용안내

|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 |

- 자치법규의 입안 ·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 자문 제공

|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

- 지자체의 조례 전수를 검토하여 정비과제 발굴, 정비안 제공

|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

- 지자체의 제정 · 개정 조례안에 대한 종합 컨설팅 제공

|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

- 직접 지자체를 방문하여 자치법규 입안 · 해석, 규제개혁 등에 대한 종합상담 및 교육을 지원

| 표준(모델)조례안 검토 지원 |

- 중앙행정기관이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표준(모델) 조례안을 작성하는 경우 종합검토 의견을 제공

■ 문의 : 자치법제지원과
TEL. 044-200-6761